

다. 2개월 이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학교)에서 평정한다.

※ 원 소속기관(학교)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 받아야 함(교원정책과-3503, 2007.07.26.).

※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 및 타시도 파견(교환)근무하는 자도 원 소속기관(학교)에서 평정함.

라.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마.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바.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5. 평정점의 분포비율(승진규정 제21조 및 제28조의6)

평어	평정점	분포비율(%)	비고
수	95점 이상	30	※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우	90점 이상 ~ 95점 미만	40	
미	85점 이상 ~ 90점 미만	20	
양	85점 미만	10	

※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 평정자와 확인자는 소속 평정 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

※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평정점 분포비율은 평정자 및 확인자, 교사 다면평가자가 각각 평정점을 부여할 때와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할 때 지켜야 할 분포비율에 해당함

6. 평정점 환산율(승진규정 제22조 및 제28조의7)

평정대상자	평정 방법	환산율				합산점	비고		
		근무성적평정점		다면평가점					
		평정자의 평정점	확인자의 평정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교 사	(만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환산)	20점 (20%)	40점 (40%)	32점 (32%)	8점 (8%)				
교감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만점)	100점	100점			100점			
	(환산)	50점 (50%)	50점 (50%)						